고 성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510호 2022. 2. 15.(화)

조 례

고성군	조례	제2714호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리]	2
고성군	조례	제2715호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5
고성군	조례	제2716호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•••••	7
고성군	조례	제2717호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		
		일부개정조례		9

입 법 예 고

고 시

	-				
회					
람					

발행: 고성군, 편집: 군정혁신담당관(670-2642, 행정 2642)

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

2022년 2월 15일

고성군 조례 제2714호

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·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해양"이란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.
- 2. "연안 해역"이란 「연안관리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- 3. "해양쓰레기" 란 고성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관할구역인 해안가,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, 폐어망, 폐로프, 폐비닐, 폐스티로폼, 폐플라스틱(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다)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.
- 4. "해양환경지킴이"이란 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·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해양환경도우미와 바다환경지킴이를 아울러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·처리하는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고성군민(이하 "군민"이라 한다)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·처리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1.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 - 2.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
 - 3.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
 - 4.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· 연구
 - 5. 해양쓰레기 수거 · 처리 사업 지원
 - 6.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
 - 7.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한 군민의식 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
 - 8.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제5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, 유입 경로,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해양환경지킴이)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채용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- 제7조(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)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 · 운영
 - 2.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
 - 3.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 · 연구
 - 4.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
 - 5.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군수는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)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 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

2022년 2월 15일

고성군 조례 제2715호

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양봉산업의 유지·발전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 · 보급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수는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육성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지역 특성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
 - 2. 양봉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
 - 3.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
 - 4.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
 - 5.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
 - 6. 꿀벌의 보전 · 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
 - 7. 꿀벌 질병의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
 - 8.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·관리 방안

- 9. 양봉 산물·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
- 10.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군수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육성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실태조사)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·추진을 위하여 양봉산 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전문인력 양성)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과 관련된 대학·연구소 또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·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7조(재정 지원)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양봉 관련 시설 · 기자재 및 양봉 산물 · 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
 - 2. 꿀벌 및 양봉 산물·부산물의 유통·판매 및 홍보사업
 - 3.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 · 보급사업
 - 4.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
 - 5. 밀원식물의 식재·증식 및 보호·관리사업
 - 6.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, 소비자 등 교육·훈련 사업
 - 7.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.

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

2022년 2월 15일

고성군 조례 제2716호

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배출시설 및 처리시설"을 "배출시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존시설의 증・개축) 가축사육	제4조(기존시설의 증·개축)
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<u>배출시설</u>	
<u>및 처리시설</u> 을 운영하는 기존시설(이	
하 "기존시설"이라 한다)이 현대화	
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	
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	
증ㆍ개축할 수 있다.	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
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.

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

2022년 2월 15일

고성군 조례 제2717호

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"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"(·지방자치법·제61조"를 "(「지방자치법」 제70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3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"를 "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제40조"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"(보상금외 지급결정)"을 "(보상금의 지급결정)"으로 하고,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 중 "제13조제3항"을 "제13조제4항"으로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	제1조(목적) 「지방자치법」제4
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	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
따라 고성군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	
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	
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	
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	제2조(정의) ①
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직무"란 고성군의회(이하 "의	1
회"라 한다)의원이 다음 각 목에	
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를	
말한다.	
가.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(·	가(「지방
지방자치법 · 제61조에 따라	기· <u>(174.8</u> 자치법 제70조 <u>]</u>
개회된 위원회)에 출석하여 공	<u> </u>
무를 수행하는 경우	
	.) (된레미 기Ó)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2. "의정활동비"란 <u>「지방자치법</u>	2
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	조
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	
다.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제4조제1	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
항제2호의 장애란 <u>「공</u> 무원연금법	
<u>시행령」제45조</u> 에 규정된 장애등급	령」 제40조
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로	
한정한다.	

공토	^년 제510호	고 성 :	군 공 보	2022년 2	월 15일(화)
	② (생 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	제7조(보상금외 지급결정)			<u> 급결정)</u>	<u>제1</u>
	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	후 군수가 결	3조제4항		
	정하여 지급한다.				

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[별지 제1호서식] (현행)

제	ই	ስዕ አ ኒብ	т на	1.7	シフル	1	처리기간	
접수		의원 상해	궁 보7	ਰ ਹ	ツナベ		15일	
보상대상의원	성 명				생년월일			
	성 명		의원 과의 관계		생년월일			
청 구 자	주 소	000-00					전 화 번 호	
	청구내용	□ 사망	□ 장약	게	□ 상	H		
	보상금 수 령 금융기관		은행 지점	- 1E	좌번호			
상 병 장 소					상병연월일	시		
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				·				
「고성군의 청구합니다.	회 의원 성	상해 등 보상금			:례」제6조	에 따	라 위와 같이	
		년	월 청구인	일		(인경	장 또는 서명)	
		경우 : 사망자의 상해의 경우 :		1부,	장해진단서	1부	l	
3	. 청구인의	통장사본 1부	나(사망.장애.	상해	공통)			
상기자는 「기	시방자치법	」제34조에 해	당됨을 확인]하여	이송합니다	구 .		
				년	월	,	일	
	고성군의회 의장 직인							
고성군수	- 귀하							

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[별지 제1호서식] (개정안)

접수 제		ই	•	이위	상해	드	ᆸ사	.ユ	처구	ᆚᅿ		처리기간
н				76	اره م	0	م تك	П	^0 I	~1		15일
보상대상의	의원	성	명						생년월	일일		(남·여)
		성	명			의원 과의 관계			생년월	릴일		(남·여)
청 구	자	주	소									전 화 번 호
	·	청구	내용		사망] 장애			상해		
		수	상금 령 ·기관				은행 지점	계3	라번호			
상 병 장	소							,	상병연원	월일/	Ŋ	
상병원인 발 생 상								·				
「고성 청구합니		회의	원 상	해 등	보상금 년	지급 월 청구		· 조i 일	례」제(6조어		라 위와 같이 장 또는 서명)
첨부서휴	첨부서류 1. 사망의 경우: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, 사망진단서 1부 2. 장애와 상해의 경우: 상병경위서 1부,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(대리인 경우) 3.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(사망.장애.상해 공통)											
상기자는	<u>-</u> 「ス	니방지	·치법」	제42	조에 하	당됨을	확인하	하여	이송힙	니디	- .	
							1	년	9	1	,	일
						고	성군	의호	회 의견	장	직 역	રો
고성	군수	= 귀	하									

고성군 공고 제2022-317호

「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」

「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2. 15. 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『고성군 우리아이 함게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』를 제정하여,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**O** 목적, 정의
 - 안 제1조 ~ 제2조
- O 군수의 책무
 - 안 제3조
- O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
 - 안 제4조 ~ 제8조
- 지원대상 및 지원액
 - 안 제9조
- 지원신청, 진원결정,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
 - 안 제10조 ~ 제13조
- 지원중지, 바우처의 환수, 사용자 준수사항 등
 - 안 제14조 ~ 제17조

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다음

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교육청소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나. 의견제출 사항
 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 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: 고성군 교육청소년과
 - 우 52943 /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

(전화: 055-670-4653, FAX : 055-670-4659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

붙임 「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」 1부. 끝.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(이하 "바우처"라 한다.)"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고 성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- 2. "지역화폐" 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
- 3. "보호자" 란 아동의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사용자" 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보호자를 말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바우 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,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군수는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
- 제4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 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보육업무 담당 과장
 - 2.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
 - 3. 아동관련 기관·단체의 관련자
 - 4.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자
 - 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-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 - 2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기록보존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.
- 제9조(지원대상 및 지원액) 군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초과 12세까지의 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바우처를 지원한다.
 - 1. 12개월 초과 ~ 84개월 아동: 월 10만원
 - 2. 85개월 ~ 12세 아동: 월 5만원
- 제10조(지원 신청)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바우처 지원대상인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 · 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 - ② 사용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바우처지원대상인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 · 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- 제11조(지원 결정)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, 군수에 게 신청서를 송부한다.
 - ② 군수는 아동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,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.
- 제12조(지원시기 및 지원방법) 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원한다.

- ② 바우처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3조(이월 및 사용기한) ① 바우처는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.
- 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,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.
- 제14조(지원중지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의 지원을 중지한다.
 - 1. 아동이 사망·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
 - 2.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
 - 3. 아동이 행방불명,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
 - 4.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
 - 5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- 제15조(바우처의 환수) 군수는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13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, 부당하게 지원된 바우처를 환수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.
 - ② 사용자는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,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.
 - ③ 사용자가 바우처를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갈취, 절취,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.
- 제17조(시행규칙 등)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바우처 지원대상에 관한 특례) 제9조에도 불구하고 2021. 12. 31.이전 출생아동은 12개월이 초과하지 않아도 2022. 12. 31.까지 바우처를 지원한다.

■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〔별지 제1호서식〕

	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신청서									
신	성 명	주민 등록 번호			대상자와의 관 계					
신청인	주 소			연락처		· 자택: 개전화:				
-11	성 명	주민등록번호			학교·학년					
대 상 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			학교·학년					
	성 명	주민등록번호			학교·학년					
지원	^일 방법	X]·	격화폐(고성사랑싱	}품권)로	지원					
사 용 자	성명 휘 전화	주민등록번	호.		대/	상자와의 관계				
차	※ 성명,	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 하게 기재 요망	명의자가 일치하	여야 지원]가능					
	-지방법	□ 서면 □ 전자우편]지 □ 기타(,				
	신청인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, 『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』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신청합니다.									
고	년 월 일 신청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 고 성 군 수 귀하									
		개인정보	수집·이용, 제공	동의서						
신 같 십	청인은 고 이 개인정 시오.	성군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 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고자	심하여 「개인정보 ↓ 합니다. 내용을 자	보호법」 저 -세히 읽으	15조 및 제17 -신 후 동의 여	조에 따라 아래와 부를 결정하여 주				
	개인정보	수집·이용 내역 항 목	수집 및 이용목적	1	н	유기간				
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		목번호, 전화번호, 주소,	상군 함께키움 바우치	-		표기간 종료 시까지				
		·성원과의 관계 등								
		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-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 기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			를 수 있습니다. 예 □ 아	니오				
	그러나 동	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-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	스 제공에 일부 제	습니다. 한을 받을 □ •	실 수 있습니다. 계 □ 아 니	· - - -				
			본 인 법정대리인	성명 성명	((서명 또는 인) (서명 또는 인)				
신청	청인은 이 통하여 E	행 정 정 <u>성</u>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 남당공무원이 보호자, 가구원의	セ 공 동 이 용 전자정부법」제3 주민등록 등본 을	동의서 6조제1항 을 발급받여	·에 따른 행정 아 받아 확인하	정보의 공동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				
*동		는 경우 신청인이 개별 서류를 직		^다 . 청인		(서명 또는				
인)		<u>о</u> п	의 사 형	하 2 						
1. 2.	함께키움 해당하는 함께키움	바우처 지원시「고성군 함께키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: 바우처 지원 신청서 등 작성•	 움 바우처 지원 .	조례 . 제 .	14조 각 호의 있습니다. 되지 않습니다	어느 하나에				

■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워 조례 「별지 제2ㅎ서식〕

	٦2	성군 우리아이 함께키	음 바우기	터 사용	자 변경	경 신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	
신청인	명	주민등록번호		대상자와의 관 계					
인	주 소			연락처		자 휴대	-택: 전화:		
	성 명	주민등록번호			학교·학	년			
대 상 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			학교·학	년			
	성 명	주민등록번호			학교·학	년			
지유	^担 방법	지역회	화폐(고성사랑·	상품권)으로	보 지원	T			
변경	성명	주민등록번호	5			대성	대상자와의		
변경사용자	郭 松화			-1-1-1 mls	N_1 ,		관계		
	*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지원가능 정확하게 기재 요망 변경사유 위와 같이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사용자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
	년 월 일 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								
고	고성군수 귀하								

붙임

비용추계서

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관련조문 및 비용 발생 요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업비
 - 12개월 초과~ 84개월: 월10만 원 바우처 지원
 - 85개월 ~ 12세: 월5만 원 바우처 지원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사업대상: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2개월 초과 ~ 12세 아동
- 사업규모: 3,343명(2021년 12월 기준)
- 12개월 초과~84개월: 1,158명, 85개월~12세 아동: 2,185명

나. 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 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합계
세입	군비	2,700,600	2,718,600	2,736,600	2,754,600	2,772,600	13,683,000
	군비(계)	2,700,600	2,718,600	2,736,600	2,754,600	2,772,600	13,683,000
세출	12초과 ~84개월	1,389,600	1,401,600	1,413,600	1,425,600	1,437,600	7,068,012
	85개월· 12세	1,311,000	1,317,000	1,323,000	1,329,000	1,335,000	6,615,085

다. 재원조달 방안: 2022년 ~ 2026년: 본예산(일반회계) 편성

구 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	
		(2022년)	(2023년)	(2024년)	(2025년)	(2026년)	합계	
	의존	재원	_	_	_	_	_	_
재원	자체	재원	2,700,600	2,718,600	2,736,600	2,754,600	2,772,600	13,683,000
조달	기타		-	_	_	_	_	_
	소	계	2,700,600	2,718,600	2,736,600	2,754,600	2,772,600	13,683,000

작성자: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	
○ 성명(단체명):	
○ 주 소:	
○ 전화번호:	
○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	

제정안	찬반의견		수정안	스러시아
세정원	찬성	반대	十分 世	수정사유

고성군 공고 제2022-328호

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·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·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2. 15.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전에 따른 명칭과 위치 변경과 시설 사용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시설의 명칭과 위치 변경(안 제2조)
- 시설 운영자에 대한 겸직 조건 명시(안 제5조)
- 시설 개방 및 사용에 대한 사항 변경(안 제6조, 제8조)
- 시설 정기휴무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(안 제10조)
- 시설 입장제한에 대한 사항 일부 변경(안 제16조)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교육청소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: 고성군 교육청소년과

우 52943 /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

(전화: 055-670-4663, FAX: 055-670-4659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
붙임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・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·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·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청소년문화의집(이하 "청소년문화의집"이라 한다)"을 "청소년문화의집"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조(명칭과 위치)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(이하 "청소년문화의집"이라 한다)의 명칭 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 - 1. 명칭: 고성동부청소년센터
 - 2. 위치: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44번길 26-5(고성동부도서관 1층)
- 제4조제3호 중 "다목적홀, 정보자료실, 공연연습실, 동아리방, 비디오감상실"을 "실내집회장, 프로그램실(자치활동실, 특성화수련활동장)"로 한다.
- 제5조제1항 중 "관장과"를 "운영대표자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관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"을 "운영대표자는"으로, "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"을 "청소년수련시설을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 또는 운영대표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그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사용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에 따르되,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- 1. 수련시설 자체행사
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
- 3. 학교,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
- 제1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
 - 2. 매주 월요일
 - 3.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
- 제16조 중 "감염병환자, 정신질환자"를 "감염병환자"로 한다.

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문	제1조(목적)
화체험 기회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육	
성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 <u>청소년문</u>	<u>청소년문화의집</u>
화의집(이하 "청소년문화의집" 이라	
<u>한다)</u> 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	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위치) 청소년문화의집은 고성군	제2조(명칭과 위치) 고성군 청소년문화
고성읍 교사4길 13에 둔다.	의집(이하 "청소년문화의집"이라
	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	1. 명칭: 고성동부청소년센터
	2. 위치: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44번길
	26-5(고성동부도서관 1층)
제4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	제4조(정의)
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"시설"이란 <u>다목적홀, 정보자료</u>	3 실내집회장, 프로그램실
실, 공연연습실, 동아리방, 비디오	(자치활동실, 특성화수련활동장)
<u>감상실</u> 등의 시설과 노래방 기기,	
비디오 기기 등 비품자료 일체를	
말한다.	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요원 등) ① 청소년문화의집	제5조(운영요원 등) ①
운영을 위하여 <u>관장과</u> 청소년지도사	<u>운영대표자와</u>
1명, 자원봉사자, 전문강사 등으로 구	
성한다.	
② 관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	② <u>운영대표자는</u>
중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에	
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, 청소 년업무담당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. ③ (생략)

자료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 한다. 다만, "다목적홀"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사용허가)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제8조(사용허가)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"다목적홀"을 1일 이상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 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 정일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.

제10조(정기휴무) 청소년문화의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신정, 설연휴, 추석연휴
- 2. 공휴일 다음날

청소년수런시설을 담당하는	6급
이상의 공무원	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시설의 개방) ① 각종 시설물 및 제6조(시설의 개방) ① -----------. 〈단서 삭제〉

② (현행과 같음)

자는 미리 군수 또는 운영대표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그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② 사용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 청 접수순에 따르되, 다음의 경우에 는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 - 1. 수련시설 자체행사
 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 년 활동
 - 3. 학교,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

제10조(정기휴무) ------

- 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에 따른 공휴일
- 2. 매주 월요일

〈신 설〉

제16조(입장제한) 감염병환자, 정신질환 자,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·훼손하 는 자 및 군수가 시설에 입장 또는 계속 이용케 함이 청소년 건전육성과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거절 하 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19조(준용)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 〈삭 제〉 한 사항은 「청소년기본법」「청소 년활동진흥법」「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「「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」를 따르며,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 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 〈삭 제〉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	<u>관이</u>	필요한	경우
제	16조(입	장제한)	<u> 감염병환자</u>

3.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

■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[별표] (현행)

공보 제510호

청소년문화의집「다목적홀」시설사용료(제11조관련)

시설명	면적	사용내역	1일 사 용 료	비고
다목적홀	178.1 m²	○ 영상장비, 음향장비 사용 ○ 전시, 공연, 기타행사 (1회 3시간 기준)	30,000원	3시간초과 경우 1시간당 5,000원 가산
	111	O 냉·난방시설 (1회 3시간 기준)	20,000원	3시간초과 경우 1시간당 10,000원 가산

■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[별표] <개정 2022. 2. 15.>

청소년문화의집 시설사용료(제11조관련)

月村田	사용료		ษา	
시설명	사용내역	청소년	일반	비고
실내집회장	○ 영상장비, 음향장비 사용 ○ 전시, 공연, 기타행사 (1회 2시간)	10,000원	20,000원	※ 초과사용시 시간당 기본
	○ 냉·난방시설 (1회 2시간)	10,000원	20,000원	사 용 료 의 50% 가산징수
프로그램실 (자치활동실, 특성화수련 활동장)	O 1회 2시간	10,000원	20,000원	

※ 청소년문화의집 자체 프로그램(청소년문화교실, 특강교실, 월별수련관 행사, 동 아리활동, 사회교육, 체육활동 등) 및 청소년활동 (문화활동, 교류활동, 수련 활동) 운영을 위한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성군	· 청소	년문화	화의집	관리・운영	조례	일부개정조례	안
○ 성명(단체명):							
○ 주 소:							
○ 전화번호:							
○ 의견 내용(찬·ː	반 의	견과 그	그 이유)			
개정안	찬반 찬성	·의견 반대	_	수정안		수정사유	

개정안	산반의선		수정안	수정사유
/11/8 단	찬성	반대	T78 단	7-7871711

고성군 고시 제2022-24호

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> 2022. 2. 11. 고 성 군 수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		
(별지참조)						

○ 도로명주소 변경

변경 전 도로명주소	변경 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변경사유	
(별지참조)				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폐지고시일	폐지사유		
(별지참조)				

-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(☎055-670-2177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- 도로명주소 사용
 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\bigcap	도로명주소	벼겨	드
	エエヤイン	F1 /2	$\overline{\sim}$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

연 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삼산면 두포리 170	삼산면 두포5길 156	2022.02.11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삼산면 두포리)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	
2	개천면 청광리 515-4	개천면 영회로 1293	2022.02.11.	건물번호부여신청	도로의 시종점인 영오면과 회화면을 연결하는 길임을 반영	
3	영현면 신분리 1161-4	영현면 대가로 1855	2022.02.11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대가면)을 이용하여 대가로로 명명	
4	개천면 나선리 1020	개천면 나선길 55-20	2022.02.11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개천면 나선리)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여	
5	동해면 봉암리 1519	동해면 봉암산업로 28	2022.02.11.	건물번호부여신청	봉암동원일반산업단지 내 신설도로	
6	동해면 장기리 891-1	동해면 장기1길 88	2022.02.11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동해면 장기리)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	
7	영오면 연당리 842	영오면 연당1길 95	2022.02.11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영오면 연당리)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	
8	고성읍 동외리 62-4	고성읍 남해안대로 2604	2022.02.11.	건물번호부여신청	남해안 자연지명 활용	
9	삼산면 미룡리 494-10	삼산면 공룡로 2046-48	2022.02.11.	건물번호부여신청	공룡발자국 화석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	
10	회화면 어신리 1101	회화면 석전길 75-39	2022.02.11.	건물번호부여신청	자연마을 지명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	

도로명주소 폐지

연 번	관할구역	도로명주소	폐지 고시일	폐지사유	비고
1	개천면	영회로 1293	2022. 02. 11.	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	
2	개천면	나선길 55-20	2022. 02. 11.	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	